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24
----------	------

2021년 03월 0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 경만선 의원

나. 발의일자 : 2021년 02월 02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02월 09일

라. 상정결과 :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03월 02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경만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전통무예 육성 종목 불명확, 육성 기반 구축 결여, 적극적인 정부 정책 추진 의지 미흡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전통무예 진흥 기반 구축, 전통무예 활성화 및 가치 확산의 기반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 함.

나. 주요내용

- 전통무예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전통무예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을 나열함(안 제4조)
-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전통무예진흥법」 등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기 타 :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제정 목적

-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발전과 전통무예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정의 필요성

- 전통무예는 성적 지상주의에 따른 과잉 경쟁 등 기존 스포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치유적 성격의 스포츠로 전통문화와 맥을 같이하여 예의범절과 정서함양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 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없이 자생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전통무예 관련 정책 여건이 취약했으나 「전통무예진흥법」과 “전통무예 진흥기본계획”(19.8.)을 근거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서울시차원에서 전통무예의 가치를 보존·확산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무의 경우, 주민복지 증진 또는 지방 체육·문화의 진흥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각종 사업을 별도의 조례안으로 제정할 경우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초래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다. 주요 조문별 검토

- **안 제2조(정의)**는 해당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위법령인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안 제2조제1호에서 “전통무예”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2조제2호에서 “전통무예단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음.

<관련법령>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안 제2조제2호 “전통무예단체”에서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나 일부 중복된 용어를 삭제하여 매끄럽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를 말한다.	2. ----- -----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

- **안 제4조(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에서 시장이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을 나열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 기관·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서울시는 전통무예와 관련한 사업으로 전통무예를 무형문화재로 지정, 보존·지원하는 사업(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전통무예를 관광콘텐츠화하여 정기공연을 운영하는 사업(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이 주된 것

으로 보이며, 체육부서에서는 ‘국궁 발전 종합계획 수립 학술 용역’을 시행하는 정도로 추진되고 있음. 즉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주무부서 없이 각 과의 특성에 따라 사업이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 안 제5조(표창)에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발전과 전통무예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현재 서울시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주무부서 없이 사업이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전반적인 업무 조율에 한계가 있어 동 조례안 제정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전통무예 진흥에 관하여 타광역 지자체의 경우 경기, 부산, 울산, 전남, 충남, 충북에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 중 일부 중복된 용어를 삭제하여 매끄럽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안 제2조제2호의 “전통무예단체”에서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나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로 수정함(안 제2조제2호)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124
----------	---------

제안년월일 : 2021년 03월 02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 중 일부 중복된 용어를 삭제하여 매끄럽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안 제2조제2호의 “전통무예단체”에서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나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로 수정함(안 제2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 -----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생략)</p> <p>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p>